[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04.17, 2010.03.11)

(제1쪽)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인가번호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명 칭	길음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 표 자	성 명	오 경 석	생년월일	1945년 6월 3일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92-147		
	주된사무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34 2층 (정릉동)			

인가대상	사업의명칭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계획면적	19,488.00㎡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정비건축물	72동		311	167	144	933	501	432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012. 06. 14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14,508.66㎡		국공유지	4,979.34㎡		그밖의 토 지	
	19,488.00㎡ (89필지)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유지	청산 · 수용 · 협의매수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		
			14,508.66			3,502.84	1,094.00	3,885.34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 지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근생 등)	소계	도로	공원	경관 녹지	공공 청사	소계	나대지 등
	시행전 (㎡)	14,274.00	3,198.01	10,823.99	252.00	3,885.34	3885.34				1,328.66	1,328.66
	시행후 (㎡)	16,398.00	16,015.78		382.22	3,090.00	1,241.00	948.00	707.00	194.00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전 건축물	허 가 건축물	71동		무허가 건축물	1동(신발생 동)			
	시행후 건 축 시 설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 대 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 소계	16,398.00	5	지하4층 ~ 지상24층	399	66,249.70		
		주택 분양	16,015.78			359	65,272.50		
		주택 소형	-			40			
		상 가	382.22			-	977.20		

공 급 계 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59㎡					73㎡	84㎡							
			A	B	C	D	T		A	B	C	D	E			
	계	399	80	14	12	17	9	39	107	55	39	11	16	977.20		
	토지등 소유자	139	55	8	3	4	5	11	48	3	2					
	보류시설	3	1					1	1							
	일반분양	217	12	4				27	58	52	37	11	16			
	소형주택	40	12	2	9	13	4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 분	분 양 신 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선 정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 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근저당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 청 인 수	136	136	-	-	3건 (6인)	175	140	1	5	9	20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자 별	대 상	분 양				청 산	수 용	협 의 매 수	그 밖의 처 분
			소 계	주 택	상 가	그 밖의 용 도				
	계	161	136	136			25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156	136	136			20			
	토 지 소유자	5					5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대 상	175건	이전설정	128건	해지 또는 소멸	47건

세입자 대 책	대 상	-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	주거이전비 지 급	-	비대책	-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류	명 칭	규 모	설치비용(원)	관리청	종 류	명 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로	중로2-418 외2	1,241.00	4,509,110,000	성북구	도로	도로		3,843.00	3,843.00
	공원	소공원	948.00	3,292,531,000	성북구					
	경관 녹지	녹지	707.00	2,726,604,000	성북구					
	공공 공지	공공공지	194.00	651,200,000	성북구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분양대상 종전가액)			시 행 후(분양예정 추산액)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지	건축물
	37,795,588,270	22,055,570,000	15,740,018,720	165,300,440,000	건축물에 포함	165,300,440,000

자 금 운 용	총 소요사업비	127,962,178,348	수입 추산액	165,300,440,000

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2015년 2월 일

성북구청장 인

수수료
없 음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 고시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